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변 호	1140
------------	------

2016년 6월 2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16. 4. 20 우미경 의원 발의(찬성자 10명)(2016. 4. 22 회부)

## 2.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관할 지역”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해측”을 “위측 해제”로 하며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해외”를 “국외”로 하며 “매 회의마다”를 “회의마다”로 하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빗공해 방지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음. 다만, ‘교량’을 ‘다리’로 개정하는 사항(안 제24조)에 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sup>1)</sup>과의 용어 통일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현행 유지 검토가 필요하여, ‘정도’를 ‘정밀도’로 개정하는 사항(안 제25조)은 ‘정도’가 ‘도로상 조명의 휘도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사료됨.
- 참고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의 구성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려는 것임.

---

1)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정의에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 “제1종 시설물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할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할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한다.

제14조 중 “해측”을 “위측 해제”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해외”를 “국외”로 하며 “해측을”을 “위측 해제를”로 한다.

제16조 중 “매 회의마다”를 “회의마다”로 하고, 제19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증설하고자 하는”을 “증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교량”을 “다리”로 한다.

제25조 중 “정도”를 “정밀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u>관할 지</u> <u>역</u>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특별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빛공 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u>강구</u> 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u>관할지</u> <u>역</u>----- ----- ----- ----- <u>마련</u> -----.</p>
<p>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 시 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 항에 따라 <u>관할 지역</u>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p>	<p>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 ----- ----- ----- <u>관할지역</u>----- -----.</p>
<p>제14조(위원의 <u>해촉</u>)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u>당해</u> 위원을 <u>해촉</u>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1. 위원이 장기간의 <u>치료를</u> 요하는 질 병, 6개월 이상의 <u>해외여행</u>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p> <p>2. 위원 스스로가 <u>해촉</u>을 원할 때</p>	<p>제14조(위원의 <u>위촉 해제</u>) ----- ----- ----- <u>해당</u> ----- <u>위촉 해제</u>----- -----.</p> <p>1. ----- <u>치료가 필요한</u> ----- <u>국외</u>----- -----</p> <p>2. ----- <u>위촉 해제를</u> -----</p>

3. (생략)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생략)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3.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의마다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  
-----대해서는 ----- 범위  
-----에서 -----  
-----  
-----  
-----  
-----.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  
----- 증설하려는 -----  
-----  
-----  
-----  
-----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①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 허용기준 및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② (생략)

③ 건축물, 교량, 구조물 등의 경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이내로 하며,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와 국내외 행사, 빛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

② -----  
----- 대해서는 -----  
-----.

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① -----  
-----하려  
는 -----  
-----  
-----  
-----  
-----.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리 -----  
-----  
-----  
-----  
-----  
-----  
-----  
-----  
-----.

제25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시  
장은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유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상 조명  
의 균제도(휘도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말한다)를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도로  
조명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25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  
-----  
-----정밀도  
-----  
-----.